

| 가 | 축 | 분 | 뇨 | 퇴 | 액 | 비 | 화 | 를 | 위 | 한 |

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

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39조에 의거
본 관리 대장을 농장내에 3년간 비치하셔야 합니다.

